

January 22, 2025

주식시장 질적수준 제고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- 주요내용 및 시사점

I.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의 배경

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'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, 개별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등 질적 측면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입니다.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II.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

개별 기업의 회생기회 부여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제도운영으로 인하여,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, 저성과 기업의 적시·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, ②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하였습니다.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상장폐지 요건 강화

1) 재무적 요건 - 시가총액·매출 요건 기준 강화 (2026. 1. 1.부터 단계별 시행)

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시가총액(시장평가 관련) 및 매출액(기업실적 관련) 요건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
[시총·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]

	코스피		코스닥	
	시가총액	매출액 (시총1,000억원 ↓ 예만 적용)	시가총액	매출액 (시총600억원 ↓ 예만 적용)
현행	50억원	50억원	40억원	30억원
상 향	'26.1.1.~	200억원	150억원	30억원
	'27.1.1.~	300억원	200억원	50억원
	'28.1.1.~	500억원	300억원	75억원
	'29.1.1.~	-	300억원	100억원

2) 비재무적 요건 - “감사의견 미달” 요건 정비 (2025. 7. 1. 시행)

감사의견¹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서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,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여, 아래와 같이 그 요건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(“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”)
- 예외) - 회생·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(1년) 허용
 - ① 회생·워크아웃 계획 최종승인
 - ②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
 - ③ 회생·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

3)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(2025. 7. 1. 시행)

분할재상장 시,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적용·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,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**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 시 최소요건²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**하기로 하였습니다.

2. **상장폐지 절차 효율화**

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아래와 같이 축소시켜 절차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(최대 개선기간 축소 2025. 3. 시행, 심의단계 축소 2025. 7. 1. 시행).

[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]

	코스피		코스닥	
	형식(이의신청)	실질	형식(이의신청)	실질
심의단계	1심 ↓ 동일	2심 ↓ 동일	1심 ↓ 동일	3심 ↓ 2심
개선기간	최대 2년 ↓ 최대 1년	최대 4년(2+2) ↓ 최대 2년(1+1)	최대 1년 ↓ 동일	최대 2년 ↓ 최대 1.5년

1 ①적정, ②한정, ③부적정, ④의견거절 중, ②, ③, ④를 의미함

2 코스닥과 유사하게 자기자본, 매출액,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되, 수준은 시장간 차이를 고려하여 더 높게 설정

아울러 개선기간 추가여부 성격의 **속개**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,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

나아가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, **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여 하나라도 먼저 “상장폐지 결정”이 되면 최종 상장폐지를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(2025. 3. 시행).**

3. 투자자보호 보완 (비상장거래지원 2026. 1. 1. 시행, 공시확대는 2025. 7. 1. 시행)

상장폐지 요건강화 및 절차축소로 퇴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 보호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.

- 상장폐지기업부(가칭)의 신설을 통해, K-OTC를 활용하여 폐지 후 6개월간 거래지원
-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“개선계획”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

III. 시사점

이번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단순히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, **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**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이를 통해 특히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.

(시장 건전성 및 신뢰도 강화)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, 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, 기업 가치 재평가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

(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)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, 폐지 후 6개월간의 거래지원과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
결론적으로, 이번 제도 개편은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**우량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**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나, 개별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, 상장회사로서는 제도 개편 초기에 법률자문사와 적극 논의하여, 각 회사와 관련된 요건들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여야,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관련 구성원

이정훈

변호사

T 02.3404.6518

E jeonghoon.lee@bkl.co.kr

이상재

변호사

T 02.3404.6562

E sangjae.lee@bkl.co.kr

김현정

변호사

T 02.3404.7657

E hyunjung.kim@bkl.co.kr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